

취업지원 유예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14일	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	전화번호(휴대전화)	
유예 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유예 사유	☐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				
	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				
	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				
	☐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				
	☐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				
		☐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		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월일

신청인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유의사항									
1. 신청인(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)은 위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
2.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됩니다.									
3.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,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									

※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처 리	[]인정 []불인정			유예 인정 사유 :					
				유예 불인정 사유 :					
결 재	담당		팀장		소장(과장)		청장(지청장)		결재 연월일
	. . .								